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미심위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159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방미심위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8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주회의원 등 20인

나. 발 의 일 : 2026. 7. 24.

다. 회 부 일 : 2026. 7.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1. 6.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한 분쟁뿐만 아니라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음.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사유도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되었음.

특히 누구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신고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분쟁조정부의 업무는 앞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9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된 단일 분쟁조정부 체계만으로는 늘어나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내 5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소속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의무와 분쟁조정 제도를 규율하는 해당 법률보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므로, 관련 규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조직법과 실체법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과 입법체계의 일관성을 한층 높이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방미심위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라 함) 내에 설치되어있는 분쟁조정부의 근거 규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서 현행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설></u> 5. ~ 9. (생략) <u><신설></u>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6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 9. (현행과 같음) <u>제26조의2(분쟁조정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u>

현 행	개 정 안
	<u>법률」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정위원은 각각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u> <u>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u> <u>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u> <u>3. 언론사의 취재·보도·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보도·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u> <u>4.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u> <u>③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u>④ 조정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u>

현행	개정안
	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조정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제8항에 따른 조정부의 장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⑧ 조정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균등하게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⑨ 제8항에 따른 조정부가 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⑩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⑫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행위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 위촉된 조정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6제1항 중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18 및 제44조의19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20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21제1항 및 제2항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분쟁조정부”를 각각 “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2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66조제5호 중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의”를 “분쟁조정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4항제4호의2 중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관련 분쟁과 ②같은 법 제44조의1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련 조치 및 이의신청 관련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미심위로 하여금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종전 「정보통신망법」은 ①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있었으나,²⁾ 지난 2026.1.6. 법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후 략)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

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역할 및 규모가 확대하였고, 명칭도 ‘분쟁조정부’로 변경되었음.

- 이 과정에서 분쟁조정부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함)도 종전 5명에서 9~2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분쟁조정부 구성에 관한 사항도 상세히 규정되었음.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분쟁조정부 관련 개정규정 비교 >

법률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21305호(현행)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u>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u>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u>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u> ② 제1항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u>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u> 1. <u>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u>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법률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21305호(현행)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u>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u> 3. <u>언론사의 취재·보도·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보도·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u> 4. <u>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u> ③ 삭제 ④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이 활발해지며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6.7.7.부터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조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및 관련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까지 분쟁조정부의 업무

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분야별 소부를 통해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최근 5년간(2021~2025년) 舊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업무 현황 >

(단위: 건)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6.
분쟁조정 처리건수	786	593	581	767	1,164	1,019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026.9.)

- 그런데, 종전에는 5인의 단일 조정부로 운영되던 舊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분쟁조정부로 개편되며 위원정수가 확대되었음에도 소부 설치·운영 근거가 미비하여 여전히 단일 조정부로 운영하고 있음.³⁾
- 이에 개정안은 분쟁조정부 규모 및 역할을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분야별 조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보임.
-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방미심위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현행 법에 규정하여 조직법과 실체법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

3) 방미심위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방미심위는 예산상 사정, 소부 설치 근거 미비 등을 고려하여 종전 5명의 분쟁조정위원에 2026.7.7. 4명의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총 9명의 규모로 분쟁조정부를 운영 중임.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동 개정안 제26조의2는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방미심위규칙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하에서는 그 차이점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개 정 안		「정보통신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방심위규칙* 조항
조항	주요내용	
안 제26조의2 제1항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위원 정수	법 제44조의18 제1항
안 제26조의2 제2항	조정위원 위촉, 자격요건 및 구성 비율	법 제44조의18 제2항
안 제26조의2 제3항	조정위원 임기	규칙 제5조 제1항 본문
안 제26조의2 제4항	조정위원 보궐위원 임기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
안 제26조의2 제5항	후임자 위촉 시까지 전임자 계속 수행 제도	규칙 제5조 제2항
안 제26조의2 제6항	조정위원장·조정부장 임명권자	시행령 제35조의10 제4항
안 제26조의2 제7항	조정위원 결격사유	-
안 제26조의2 제8항	분야별 조정부 설치 근거	-
안 제26조의2 제9항	조정부 심의·의결 효력	-
안 제26조의2 제10항	조정위원회/조정부 정족수	시행령 제35조의10 제3항
안 제26조의2 제11항	제척·기피·회피	법 제44조의19
안 제26조의2 제12항	대통령령 위임	법 제44조의18 제4항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 첫째, 안 제2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정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조정위원 임기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전 방심위규칙에 따른 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⁴⁾이었으나, 안 제26조의2제3항은 조정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임기를 확대할 경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사건 검토의 전문성 및 일관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매년 발생할 조정위원의 위촉 절차로 인해 소모되는 행정력과 비용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위원 임기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26조제5항은 조정위원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분쟁조정 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26조의2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조정제도의 중립성·공정성 측면에서 전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자·임직원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5조(조정위원의 임기) ① 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은 제2조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불법·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행한 이용자 계정의 삭제,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등 조치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안 제26조의2는 현직 공무원, 정당의 당원과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조정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퇴직 직후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와 달리, 방미통위, 방미심위⁵⁾ 등은 특정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차단을 위해 현직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내 종사하였던 사람까지 위원 결격사유로 명시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제2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3.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2조제2호·제5호·제8호·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및 그 밖에 사업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안 제26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조정부를 두고, 조정부에 독자적 의결권한을 부여할 경우 분쟁조정을 통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안 제26조의2제8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조정부를 두고 각 조정부별로 다양한 자격의 조정위원이 균등하게 배정되도록 하는 것은 ①분쟁조정 과정에서 특정 분야·지역의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②조정사건에 대하여 종합적 시각을 갖추게 함으로써 분쟁조정안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③각 조정부별 조정위원 구성을 균등화함으로써 분쟁당사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또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조정부의 독자적 의결권한을 부여한 것은 전체 조정위원회의 소집·개최를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직접 담당한 개별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⁶⁾, 의료분쟁조정위원회⁷⁾, 콘텐츠분쟁조

6)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정위원회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⁹⁾ 등 다른 분쟁조정기구의 사례를 볼 때, 5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임으로 독자적 의결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④ 조 정부는 조 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조 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8)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의4(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③ 조 정부는 조 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 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④ 조 정부는 조 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 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수용)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방미심위 조직과 관련된 사항인 분쟁조정 부를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방미통위설치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함.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수용) 5인 이하의 조정부를 설치하고 독자적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정부 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정부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방미심위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현행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함.

문 의 처
02)6788-5226